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건의안 -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17
------------	-----

2014년 12월 17일
교 통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4년 10월 1일, 박중화 의원 외 18명 발의

나. 회부일자 : 2014년 10월 7일

다. 상정일자

- 제257회 서울특별시의회 제5차 교통위원회(2014년 12월 17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박중화 의원)

가. 제안이유

- 자전거가 이동의 수단에서 건강과 레저의 수단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공원이나 도로 등 도심 곳곳에서 자전거를 즐기는 ‘자전거족’이 크게 늘면서 자전거와 관련한 사고가 급증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들은 늘어나는 자전거족 수요에 맞춰 공원이나 가로 등에 별도의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고 각종 표지판 등을 통해 질서유지를 홍보하고 있지만 보행자나 자전거 이용자 모두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실정임

- 특히, 「도로교통법」에 의한 ‘차’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에 자전거 도로의 운행속도가 누락됨에 따라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해 자전거 이용자가 준수해야 하는 운행속도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이에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모두의 안전을 지킬 수 있고 쾌적한 자전거 도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조속한 개정을 건의함

나. 주요골자

- 자전거가 이동의 수단에서 건강과 레저의 수단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자전거 제한속도가 지정되지 않음으로써 자전거와 관련한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바,

자전거 관련 사고를 줄임으로써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 하기 위해 자전거가 도로를 주행함에 따라 준수해야 하는 제한속도를 지정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할 것을 건의함

다. 참고사항

- 관련법령
 - 「도로교통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기타사항 : 없음
-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
 - 서울시장(도시교통본부 보행자전거과) : 원안 동의

3. 이송처

- 국 회 : 국회의장
- 정 부 :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4.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동수)

가. 개요

- 동 건의안은 자전거가 이동 수단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자전거 제한속도가 지정되지 않음으로써 자전거와 관련한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바,

자전거 관련 사고를 줄임으로써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 하기 위해 자전거가 도로를 주행함에 따라 준수해야 하는 제한속도를 지정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하는 것임

나. 자전거 관련 사고 현황¹⁾

- '10~'13년까지 자전거 관련 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사고는 '10년 2,847건에서 '13년 3,250건으로 14.2%(403건) 증가했으며, '자전거 대 보행자 사고'는 '10년 224건에서 '13년 365건으로 62.9%(141건) 크게 증가함

또한, '자전거 대 자동차 사고'는 '10년 2,475건에서 '13년 2,511건으로 1.5%(36건) 증가했고, '자전거 대 자전거 사고'는 '10년 121건에서 '13년 349건으로 188.4%(228건) 크게 증가함

- '자전거 대 자동차 사고' 및 '자전거 단독사고'는 발생건수와 부상자수의 증감폭이 크지 않으나, '자전거 대 보행자 사고' 및 '자전거 대 자전거 사고'는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p.6710

따라서, 자전거도로 연장 및 자전거 이용자 증가에 따른 중앙정부의 적절한 규제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현행 자전거 및 자전거도로 이용이 계속될 경우 향후 자전거 관련 사고 증가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임

<자전거 관련 사고 현황>

(단위: 건)

사고유형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총 계	발생건수	2,847	2,861	3,225	3,250	
	사망자수	34	19	29	26	
	부상자수	2,933	2,980	3,342	3,410	
자전거 대 보행자	발생건수	224	241	330	365	
	사망자수	1	0	3	1	
	부상자수	231	250	348	402	
차대차	자전거 대 자동차	발생건수	2,475	2,444	2,652	2,511
		사망자수	32	18	25	22
		부상자수	2,535	2,532	2,714	2,559
	자전거 대 자전거	발생건수	121	156	216	349
		사망자수	0	0	1	1
		부상자수	140	179	253	426
자전거단독	발생건수	27	20	27	25	
	사망자수	1	1	0	2	
	부상자수	27	19	27	23	

다. 자전거 속도제한 관련

- 동 개정건의안은 자전거도로의 연장과 자전거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사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자전거 이용자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가 자전거 속도제한을 규제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하는 것으로서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됨

다만, 자전거는 교통, 레저 및 스포츠 수단 등 그 기능과 역할에 있어서 다양성을 갖고 있어 일률적인 속도제한 규정은 자전거 이용활성화 측면에서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임

따라서, 관련 법령의 개정은 일반도로, 자동차전용도로, 고속도로 등에 따라 자동차 등의 운행속도 규정을 달리 적용함과 같이 자전거의 경우에도 자전거 도로 유형 등에 따라 속도 규정을 달리 적용함으로써 이용자 안전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한편 서울시장은 동 건의안에 대해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 등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원안 동의 의견을 제출하였음²⁾

2) 보행자전거과-13749(2014.12.4.)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건의안

자전거가 이동의 수단에 이어 건강과 레저의 수단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공원이나 도로 등 도심 곳곳에서 자전거를 즐기는 ‘자전거족’이 크게 늘면서 자전거와 관련한 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늘어나는 자전거족 수요에 맞춰 공원이나 가로 등에 별도의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고 각종 표지판 등을 통해 질서유지를 홍보하고 있지만 보행자나 자전거 이용자 모두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도로교통법」에 의한 ‘차’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에 자전거 도로의 운행속도가 누락됨에 따라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해 자전거 이용자가 준수해야 하는 운행속도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천만 서울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는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모두의 안전을 지킬 수 있고 쾌적한 자전거 도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조속한 개정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2014. 9.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일동